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다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란 바목(종전의 자목) 중 “과학 및 방송통신”을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한다.

별표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6호(종전의 제9호) 지정 범위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별표 2 제7호의 지정 기준란 기호(○) 중 “과학 및 방송통신 분야”를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원조사) ①・② (생략)	제3조(자원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 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 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 임한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 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 제>
3. ~ 5. (생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1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1.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구분	자원명
1. 관리 대상 물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관리 대상 업체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별표2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9.>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지정 범위	지정 기준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승인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자가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가통신설비
3.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기술 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4.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5. 정보통신공사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사업자로서 기술 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서 기술 인력이 2인 이상인 업체
7.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